

화순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97. 6. 24 화순군수

나. 회 부 일 자 : 97. 6. 27

다. 상 정 일 자 : 97. 7. 23(제56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)

2. 제안 설명요지

가. 제 안 자 : 문화공보실장 최 영 옥

나. 개정사유

-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개정에 따라 기부행위(주민성금 기관단체 기탁금)부분을 삭제하여 기금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함.

다. 주요내용

- 체육진흥기금 조성 정의 변경(제2조 제2항 및 제3항)
 - 주민성금 → 삭제
- 기금의 조성(제4조 제2항)
 - 주민 및 기관단체등이 기탁한 성금 → 삭제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민병항)

- 동 조례 개정안은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불합리한 조문 및 용어를 정비키 위한 개정조례로서 화순군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치는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답변 요지

"생 략"

5. 토론요지

"생 략"

6. 심사결과

"원안가결"

첨 부 : 화순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부. 끝.

화순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97 - 96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일자 : 1997. 6. 24

제출자 : 화순군수

1. 제안이유

기부금품모집규제법 개정에 따라 기부행위(주민성금, 기관단체기탁금)부분을 삭제하여 기금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체육진흥기금조성 정의 변경 (제2조 제2항 및 제3항)
 - 주민성금 → 삭제
- 기금의 조성(제4조 제2항)
 - 주민 및 기관단체등이 기탁한 성금 → 삭제

화순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제2항 및 제3항중 "주민성금"을 삭제하고, 제4조 제2항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